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복지법 제12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 전반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와 같이 아동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심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. 따라서 아동의 보호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(안 13조의 3 신설)
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 보호 관련 심의사항은 사례결정위원회 전담으로 지정
- 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,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 구성
- 최소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, 심의·의결 결과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보고

나.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시 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(안 14조 신설)
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별도로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시 결정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및 의무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각각 “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, 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한다.

제13조의3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사례결정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)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문적·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(이하 “결정위원회”)를 둔다.

1.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2.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
3.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4.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에 관하여 개별적·구체적으로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보호대상 아동 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그 결과를 시·도 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제1항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.

③ 결정위원회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시·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시·도지사가 지명한다. 당연직 위원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 소속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으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며,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아동·법률·의학 등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변호사, 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동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아청소년 관련 전문의 등 아동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정신건강전문가로서 아동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아동·청소년·가족복지학, 사회복지학, 심리학 전공자로서 아동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사법경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아동 및 가족 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결정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,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의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결정위원회 심의·의결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정한다.

제13조의4(중전의 제13조의3)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법 제15조 보호조치 및 법 제16조 퇴소조치 등 결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.

제14조(보호조치 결정 등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, 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게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후에 심의할 수 있다.

시행령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) ① (생략)	제13조의2(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.
1. <u>심의위원회</u> 위원의 소속, 직책, 성별 및 임기	1. <u>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</u> -----
2. <u>심의위원회</u> 의 개최 일시, 장소, 출석위원,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	2. <u>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</u> 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3조의3(사례결정위원회) ① <u>시·도지사는 법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)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문적·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(이하 “결정위원회”)를 둔다.</u>
	1. <u>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</u>
	2. <u>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</u>

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
4.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에 관하여 개별적·구체적으로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보호대상아동 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그 결과를 시·도 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제1항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.

③ 결정위원회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시·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시·도지사가 지명한다. 당연직 위원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 소속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으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이 지명하는 사람이며,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아동·법률·의학 등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변호사, 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동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아청소년 관련 전문의 등 아동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정신건강전문가로서 아동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아동·청소년·가족복지학, 사회복지학, 심리학 전공자로서 아동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사법경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5. 그 밖에 아동 및 가족 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사

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공무원인 위원
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
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결정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,
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의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이 경우 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결정위원회 심의·의결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
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정한다.

제13조의3(소위원회)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

제13조의4(소위원회) ① -----

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 ②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 <u>제14조</u> (생략)	----- ----- 단, 법 제15조 보호조치 및 법 제16조 퇴소조치 등 결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<u>제14조(보호조치 결정 등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, 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게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후에 심의할 수 있다.</u> <u>제14조의2</u> (현행 제14조와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19